

[참고]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 (2013. 9. 16. 공포·시행)
제68조(예산안 심의)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시장·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(이하 "예결위원회"라 한다)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.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 <u><신설></u>	제68조(예산안 심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.</u>